

알려드립니다

선박수리신고(허가)란?

관련법규



항계내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동반하여 선박수리를 하는 2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신고(위험물운송선박 등*은 허가)하여 안전한 부산항을 만듭시다!

☎ 신고 및 허가대상은 우측표 참고요망

최근 타 무역항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한 녹 제거(그라인더 사용) 중 불꽃이 다른 선박에 옮겨 붙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산항 5부두 급유선계류지에서는 원인미상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위한 녹 제거(그라인딩)를 포함한 불꽃(경미한 불꽃) 또는 열이 발생하는 선박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박수리신고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 제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구역” 밖에서 수리하는 경우

예) 상갑판-핸드레일, 해수파이프, 하치코밍, 선수·미 윈치, 셸가이드, 마스트, 해치커버가 개방형일 경우 홀드 내 보강작업 등 대기를 볼 수 있는 장소

선박수리허가

위험물운송선박(톤수제한없음) 및 20톤 이상의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구역”에서 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구역”(허가대상)

- 기관실, 슬러지·빌지탱크, 연료탱크, 윤활유 탱크, 코퍼뎀, 공소(void space), 축전지실, 페인트창고(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등), 폐위된 차량구역 등

인터넷 통합검색이나 우리청 및 법제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주체는 선장(선주 또는 선박대리점)으로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직인을 기재·서명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는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무역항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수리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구비서류

1. 선박수리신고(허가)서
2. 작업계획서
3. 선박수리 안전수칙
4. 용접자격증 (본선 선원이 용접 시 선원명부제출)
5. 위험물운송선박인 경우 (무 가스 증명서 : 가스프리증명)

공사 또는 작업 허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 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

예) 선박의 선저검사, 해양생태계조사, 항만해수채취, 해양동·식물조사, 항만공사(수심준설), 펌프침설관설치 또는 철거, 침몰물인양제거, 지질·지반조사, 폐기물수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용접수리 등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수면 또는 해양공간에 폐기물, 폐유, 폐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벌을 받습니다.

| 선박 수리신고·공사작업허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T. 609-6554 F. 609-6514

| 해양오염사고 신고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T. 609-6526 F. 609-6519

부산해양경비안전서 T. 664-2591

| 해양부유쓰레기 신고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T. 609-6525 F. 609-6519

| 해양사고신고 |

국민안전처 T. 122

관제실 T. 664-2550



화재·폭발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산항 만들기 위한 안내문



부산항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